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4. 3.(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3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8년도 제45차 및 제8차 전체회의의 회의록 및 일부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건」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의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9-15-07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편성평가정책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평가대상입니다. 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되겠습니다. ‘18년도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8개 사업자로 367개 방송국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지상파 라디오의 경우에는 국악대전 FM, CBS대구 FM이 개국을 하였고, SO의 경우에는 (주)티브로드 세종방송, (주)씨엠비 세종방송이 개국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자는 2개사, 방송국은 4개국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영역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우수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오보 방지 노력, 시청자 권익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합니다. 편성영역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등을 평가하게 되고, 운영영역은 재무건전성과 경영투명성,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방송사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매체 특성에 따른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배점은 지상파TV 900점, 지상파R·DMB 500점, 종편PP 700점, 보도·홈쇼핑PP 500점, SO·위성 500점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절차입니다. 방송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하게 됩니다. 방송평가지원단이 조사·검토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18년도 결과를 확정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일정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4월까지 사업자군별로 방송사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후 6월까지 방송사 제출자료를 접수하고, 9월까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방송 평가지원단의 조사 및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11월에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에 평가결과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안전 제출자가 방송평가위원장이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방송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드린 이 안전은 바꾼 기준이 아니고 바꾼 기준은 내년 사업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해 오던 기준에 따라 방송평가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먼저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신 표철수 위원님과 방송 평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평가는 방송사업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매체의 특성에 따른 방송의 내용과 편성·운영 등을 계량해서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약 40%가 반영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방송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보고한 대로 평가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가지원

단의 평가를 방송평가위원회와 방통위원들이 점검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각 방송매체의 성과와 한계, 특징 등을 잘 가려내야 그 후속작업으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표위원장 말씀해 주신 대로 방송평가 제도는 시행 이후부터 평가지표와 배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제4기 위원회에서는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변별력 강화에 역점을 둔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이전에 규칙에 근거한 마지막 평가작업인 만큼 사무처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주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방송평가 영역별 점수 배점표를 보면 평가항목이 프로그램 우수도를 평가할 때 방송사 자체프로그램 질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상파TV와 종편PP만 해당이 되는데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 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넘기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프로그램 질의 평가는 2가지가 있는데 방통위가 시행하고 있는 KI지수에 대한 평가가 있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자체적인 평가사항은 방송사가 KI조사보다는 세부적으로 더 했습니다. 방송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사항을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평가할 때 배점하게 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방송사가 자신들이 내보내는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것을 우리가 객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쭙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 심사위원들이 대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감점을 합니까? 다들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전창호 편성평가정책과 사무관

- 담당 사무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는 KI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

편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은 해당 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를 실시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가 2점을 부여하고 있고 제출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면 6점, 단순하게 열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4점 이런 식으로 평가항목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해 오던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떨 수 있을지 여쭙본 것입니다. 배점 총점이 지상파TV는 900점 만점이고 종편PP는 총점이 700점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도 종편의 비중이나 매체의 영향력, 또 매체력을 감안할 때 점점 격차는 좁혀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배점이 바뀔니까? 어떻습니까? 개정이 된다면서요?

○ 표철수 상임위원

- 내년 배점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보도전문PP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총점이 높아집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총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낮춘 것도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평가위원장님께 직접 답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실제로 평가기준을 보시면 지상파TV에는 해당이 되나 종편PP에는 해당되지 않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가항목 별로 어떤 부분은 지상파, 예를 들면 지역방송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상파에 해당되지만 종편에는 해당되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점수는 900점, 700점으로 차이는 있지만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40%를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여차피 환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 비교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마지막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그다음에 홈쇼핑PP는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가해서 과기정통부로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방송사업자 중 SO나 홈쇼핑, 또 위성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재승인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를 잘하고 있지만 타부처로 이관되어 있는 인허가권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평가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평가해서 타부처로 이관되어 있는 인허가권에 우리가 제대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허가권이 과기정통부에 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이것입니다. 앞으로 지상파나 종편만 비중을 높게 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여러 가지 평가가 개선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 **양한열 방송기반국장**

-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SO와 위성, 홈쇼핑 인허가권은 과기정통부에 있지만 방송평가,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방송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 못지않게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허가와 다른 일이지만 사후 규제 측면에서는 편성비율이나 광고 그리고 시장조사, 경쟁상황평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현재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면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개정된 평가규칙에 대한 실제 적용은 올해부터 됩니다. 2019년부터 되는데, 다만 평가할 때 2019년분 평가를 2020년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방송평가 2019년분을 생각하고 방송 운영을 해야 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홈쇼핑이나 위성, SO들이 인허가권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방통위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우리 행정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안건은 표지를 포함해서 4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안건이지만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오늘 안건을 준비해 주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표철수 상임위원님, 그리고 사무처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들이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들입니다.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송사와 방송국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과장님, 방송평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송법 제1조에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 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사의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방송평가 제도도 궁극적인 목적이 정확히 방송법 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해 보면 제도 자체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연례적인 평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방송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이런 취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 주체인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지만 절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척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지역방송은 지역방송답게 그리고 종합편성사업자들은 종합편성사업자답게, 그리고 이러한 방송채널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들은 공적책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지상파 중에서 민영방송은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해야 하지만 방송산업의 활력 제고라는 그런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송콘텐츠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방송들은 지역성 구현의 책무가 있겠지요. 종합편성PP사업자들은 편향되지 않게 골고루 편성을 하고, 또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사업자를 허가해 주고 승인해 준 당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정책적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10월, 11월 2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집니까?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실제 평가는 방송사로부터 자료제출을 받는 5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실제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기간….

○ 최선경 편성평가정책과장

- 평가위원들은 평가지원단의 조사와 검증 작업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대개 2개월 동안 158개 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충실하게 하나하나 평가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변별력 있게 우리가 지난번에 평가항목을 조금 변경한 것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과거의 항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변별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서 평가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158개 업체를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삼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방송의 본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기구로서 방송을 올바르게 이끄는 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최대한 면밀하고 엄격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5분 폐회 】